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35
----------	-------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의자 : 배준영 · 최춘식 · 김희국

양금희 · 이종성 · 조수진

김성원 · 최승재 · 정우택

이용 · 윤상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주민지원사업 관련 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한
다)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단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
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6조의3(주민지원사업 관련 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포함한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단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p>